

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 지정 공고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
2021년 6월 30일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

□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 지정

연번	기관명	대표	소재지	유효기간	비고
1	(사)대한산업안전협회	박종선	서울	'21. 6. 30. ~ '24. 6. 29.	
2	(사)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	조정훈	서울	'21. 6. 30. ~ '24. 6. 29.	
3	(사)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	맹준호	서울	'21. 6. 30. ~ '24. 6. 29.	
4	(사)한국환경건축연구원	이경희	서울	'21. 6. 30. ~ '24. 6. 29.	
5	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윤갑석	서울	'21. 6. 30. ~ '24. 6. 29.	
6	한국부동산원	손태락	대구	'21. 6. 30. ~ '24. 6. 29.	
7	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(주)	정의식	서울	'21. 6. 30. ~ '24. 6. 29.	

□ 참고사항

-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2항제1호, 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후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지정된 전문기관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같이 전담조직 및 심사전문인력, 사무실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, 변경 시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(교육시설안전팀 044-203-713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